

#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1.

구미 도시계획시설로 기 지정되어 있는 구미중학교 부지를 확장함에 따른 면적 증가로 인해 도량동내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기 지정되어 있는 도산 근린공원 동측 하단부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하여 학교 시설부지로 편입함으로써 성장기 청소년들의 실내 체육공간 확보 및 협소한 식당 공간의 마련 등 이상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득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

2.

##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 사업의 명칭 : 구미중학교 시설부지 확장
- 위 치 : 구미시 도량동 산25번지 일원
- 용 도 지 역 :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내 용 : 다목적강당(지상 2층) 신축
- 면 적 : 1,850m<sup>2</sup>
- 공원변경면적 : 기 정 - 574,000m<sup>2</sup>  
변 경 - 감1,850m<sup>2</sup>  
변경후 - 572,150m<sup>2</sup>

3. : ( )



## 의회의견 청취 설명자료



- 본 도산공원은 구미시 도량동내 기 결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으로 현재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금회 동측 하단부의 평탄지 일부를 해제하여 다목적강당을 신축함으로써 구미중학교내 부족한 실내체육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흑한·흑서기에 불가능한 각종 의식 활동을 가능케 하고자 함.
- 이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학교시설 확보 차원에서 부득이 근린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기 위함.



###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변경 | 3        | 도산공원 | 근린공원    | 도 량 동 산25일원 | 574,000 | 감)1,850 | 572,150 | 건교고제524호 (1973.12.31) | 자 연 녹지지역 |



- 사 업 명 : 구미중학교 시설부지 확장
- 위 치 : 구미시 도량동 산25번지 일원
- 사 업 내 용 : 다목적강당(지상 2층) 신축
- 사업 시행자 : 구미교육청
- 사 업 기 간 : 2006년 허가일로부터 ~ 2006년 12월 31일



# 사업계획 요약서



- ▶ 본 구미중학교는 개교 59년 된 구미시 관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중학교로, 그간 19,221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으며, 현재 3개 학년에 1,384명이 재학 중이나, 규모에 비해 강당시설 조차 없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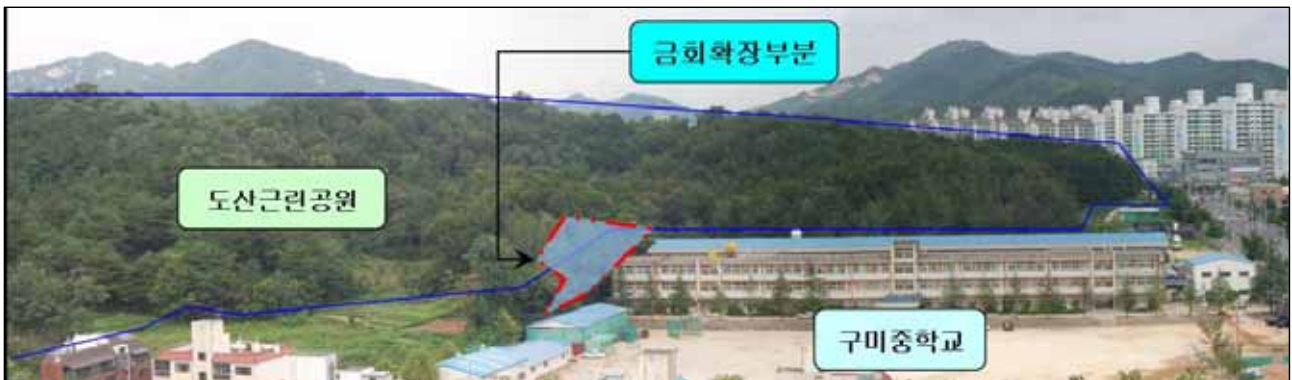
- ▶ 체육시간에는 3~5개 학반이 동시에 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므로 학생의 발달상황과 흥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우천 시에는 체육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임
- ▶ 더욱이 본교는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어서 방과 후에는 야구부 훈련 때문에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 ▶ 학교에서 학년 단위 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나 단체활동은 날씨에 따라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 학생수에 비하여 본교의 식당 규모가 너무 협소하나, 확대할 수가 없어서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 사업명 : 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구미중학교) 결정(변경)
-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03-3번지 일원
- ▶ 면적 : 22,777㎡ → 25,983㎡ (증 3,20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도시지역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 사업시행자 : 구미교육청 또는 민간사업자



| 구 분 | 내 용                                                                                  |
|-----|--------------------------------------------------------------------------------------|
| 1층  | •1,4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 및 부대시설<br>•30명 정도가 묵을 수 있는 합숙소 및 부대시설<br>(세면실 및 샤워장, 화장실 등) |
| 2층  | •동시에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다목적 강당<br>(체육시설 포함)                                        |



&lt;

&gt;





(2005 )

- ※ 1. 학급수 : 39(1) 학급(특수학급)
- 2. 학생수 : 1,384명
- 3. 기준학생수 : 1,400명
- 4. 교원수 : 56명
- 5. 교직원 10명

| 구 분 |            | 단위             | 기준                             | 산출기준                                                | 계 획   | 비고                        |
|-----|------------|----------------|--------------------------------|-----------------------------------------------------|-------|---------------------------|
| 총 계 |            | m <sup>2</sup> | 1층 급식소, 2층 다목적강당               | 급식소 면적은 강당 면적과 동일 산정                                | 1,856 | 계획면적                      |
| 1층  | 계          | m <sup>2</sup> |                                |                                                     | 928   |                           |
|     | 식 당        | 소 계            |                                |                                                     | 493   |                           |
|     |            | 급식인원           | 기준학생수 적용                       | 1,400 × 80%                                         | 1,120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기준표 적용기준(2002년) |
|     |            | 식당기준면적         | 1인당 0.9m <sup>2</sup> 에서 2.5교대 | (1,120명/2.5) × 1.1m <sup>2</sup>                    | 493   | 2.5교대 기준                  |
|     | 급식소        | 소 계            |                                |                                                     | 163   |                           |
|     |            | 조 리 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1호               | 88m <sup>2</sup> +0.04m <sup>2</sup> ×(급식학생수-1,200) | 96    |                           |
|     |            | 식품보관실          | 2002년 학교급식기본방향(보건계)            |                                                     | 25    |                           |
|     |            | 갱 의 실          | 2002년 학교급식기본방향(보건계)            |                                                     | 7     |                           |
|     |            | 영양관리실          | 2002년 학교급식기본방향(보건계)            |                                                     | 8     |                           |
|     |            | 전처리시설          | 2002년 학교급식기본방향(보건계)            |                                                     | 15    |                           |
|     |            | 보일러실           | 2002년 학교급식기본방향(보건계)            |                                                     | 12    |                           |
|     | 씨름장<br>합숙소 | 소 계            |                                |                                                     | 272   |                           |
|     |            | 씨름장합숙소         | 기준 철거건물 기준                     |                                                     | 272   |                           |
| 2층  | 계          | m <sup>2</sup> |                                |                                                     | 928   |                           |
|     | 강 당        | 소 계            |                                |                                                     | 928   |                           |
|     |            | 강당면적           | 21m × 34m = 714m <sup>2</sup>  |                                                     | 714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기준표 적용기준(2002년) |
|     |            | 강당공유면적         | 강당면적의 30%                      |                                                     | 214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기준표 적용기준(2002년) |

주) 적용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경상북도 학교시설 기준표 참조

- ※ 학교급식 업무편람 - 식당 면적 산출기준(보건계)  
학교급식의 경우 1좌석의 식당면적은 0.84~1.11m<sup>2</sup>가 권장면적임  
급식대상면적은 1인당 1m<sup>2</sup>가 기준이나, 식기회수·잔반처리·허드레셋기·식기회수용 설비를 할 경우 최소공간 10% 소요(1.1m<sup>2</sup>)
- ※ 학교급식 업무편람 - 조리실 면적 산출기준(보건계)  
급식인원 1,001~1,200명인 경우 : 조리실면적 82m<sup>2</sup>  
급식인원 1,201~1,500명인 경우 : 조리실면적 88m<sup>2</sup> + 0.04m<sup>2</sup> × (급식학생수 - 1,200)  
급식인원 1,501명 이상인 경우 : 조리실면적 100m<sup>2</sup> + 0.02m<sup>2</sup> × (급식학생수 - 1,500)
- ※ 급식소, 식당 면적은 1층에 설계로 인한 다목적강당 면적과 동일 적용
- ※ 배식실은 식당이 있으므로 15m<sup>2</sup> 제외

## ※ 참 고 자 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 마. 유통업무설비
- 바. 학교중 대학
- 사. 운동장
- 아. 삭제 <2005.9.8>
-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차. 화장장
- 카. 공동묘지
- 타. 납골시설
-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 하. 폐기물처리시설
- 거. 수질오염방지시설